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근거 신설〉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53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가.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2
나.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7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0.
3. 회부연월일 : 2026. 3.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운영 및 자원 탐사·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지원도 탐사·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안정적 핵심자원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가.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생산·수입 등 핵심자원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사업자 및 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안보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이하 “핵심자원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핵심자원산업 관련 기업,

현행	개정안
	<u>단체 및 기관에게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u> ③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자원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④ <u>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핵심자원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법 제5조1)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10조²⁾는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핵심자원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5. 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공급기반시설의 개발·확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2.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3.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4.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5. 그 밖에 자원안보 진단·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에 개정안은 2년 주기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을 포함한 핵심 자원산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자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9조³⁾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의 요청 대상 중 개정 입법이 필요한 대상은 핵심자원산업 관련 사업자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제9조에 포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진술의 요청 권한을 추가로 개정안에 포함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44조⁴⁾는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3)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안 제5조의제3항 신설에 따른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았을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실태조사에 따른 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함.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인 산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므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민간의 행정적 부담 우려보다 국가 자원안보 정책의 실효성 제고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입장임.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나.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지원할 수 있는 자원안보 관련 연구개발 업무 범위에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제3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 ①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7조⁵⁾에 따라 정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

5)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시행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획의 수립·시행(제1호),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제2호), 기술의 개발·보급·확산(제3호), 그 밖에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제4호)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문언상 표현에 따르면 지원 범위가 주로 기초 기술 개발 위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개발된 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 및 전문기업의 육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의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의 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화 연계 및 민간 전문기업의 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원안보 분야의 지원범위를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 및 사업화 단계까지 확장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 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공급기반시설의 개발·확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대상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은 합리적이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실태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음.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실태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468